

문화유산기관의 발전 전략 비교 연구*

곽 건 홍**

1. 머리말
2. 문화유산기관의 낮은 위상
3. 문화유산기관의 발전 전략 비교 :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 1) 추진배경과 목표
 - 2) 추진과제의 구성
 - 3) 추진과제 분석
4. 협력을 위한 문화유산기관의 발전 전략 재설계
5. 맺음말

* 이 논문은 2012년도 한남대학교 교비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남대학교대학원 기록관리학과 교수. 주요 논저: 『한국 국가기록관리의 이론과 실제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 역사비평사, 2003; 「기록관체제 재검토」, 『기록학연구』 제27호, 2011; 「일상 아카이브(Archives of everyday life)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소론」, 『기록학연구』 제29호, 2011.

[국문초록]

기록관·도서관·박물관 등 문화유산기관의 중장기 발전 전략은 이들 기관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가 대표 문화유산기관의 발전 전략 추진 배경, 추진과제 등을 비교 분석하고, 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했다. 아울러 문화유산기관의 낮은 위상으로부터 비롯된 발전 전략의 한계에 대해서도 서술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문화유산기관의 협력을 위해서는 독자적 발전 전략을 폐기하고, 공동 발전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주제어: 문화유산기관, 기억기관, 국가기록관리 선진화전략, 도서관종합발전계획, 박물관 발전 기본구상

1. 머리말

최근 학계에서 기록관·도서관·박물관 등 문화유산기관¹⁾의 협력과 융합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 문화유산기관 사이에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디지털시대의 본격적인 전개와 그 궤를 같이 한다. 곧 디지털 환경의 도래와 함께 문화유산기관 사이의 “전통적인 경계

1) 문화유산기관은 “도서관이나 기록관, 박물관 등 인류의 문화유산을 수집하여 정리함으로써 당대의 인류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잘 보관하였다가 후대의 인류에게 전승하는 책무를 갖고 있는 기관”(이소연, 「함께 만드는 미래: 디지털 융합과 문화유산기관의 협력」, 『정보관리학회지』 제29권 제3호, 2012, 238쪽)이다. 이와 유사한 용어로는 기억기관 등이 있다.

를 초월²⁾하는 문제가 제기 되었고, 각기 다른 소장 자원의 차이보다는 디지털 문화자원의 통합적 이용과 같은 공통의 과제에 주목하고 있다.³⁾

문화유산기관의 협력을 견인하는 주된 이유는 '정보통신기술의 혁신과 인프라의 확대 등에 따른 이용자의 요구가 변화'⁴⁾한 점이다. 곧 이용자는 각기 다른 디지털 자원을 통합된 공간을 통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유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자원의 '형식과 매체, 관리 기술 등의 유사성'도 한 요인으로 지적된다.⁵⁾ 아울러 협력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와 콘텐츠의 공동 이용에 따른 효과'⁶⁾는 물론 이용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유산기관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선행연구에서는 문화유산기관의 다양한 협력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문화유산기관 사이의 조직 협력 모형은 2000년에 설립된 영국의 박물관·도서관·아카이브협의회(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Council, 이하 MLA)가 대표적이다. MLA의 주요 활동은 공동체의 기대에 부응하는 문화유산기관의 역할 증대, 발전 전략과 정책 개발, 사회통합 아젠다의 수행, 이용자의 확대와 서비스 개선, 교육·훈련 등을 통한 전문성 향상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⁷⁾ 또한 캐나다의 LAC(Library and Archives Canada), 미국의 IMLS(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 등에 대해서도 소개한 바 있다. 문화유산기관의 사이의 협력은 조직 통합부터 '디지털 문화자원의

2) Paul F. Marty, 「An introduction to digital convergency: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 in the information age」, 『Archival Science』 8(4), 2008, p.247.

3) 이소연, 앞의 글, 236쪽.

4) 김유승, 「국회 라키비움의 전망에 관한 연구 - 문화유산기관 협력 정책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2권 제2호, 2012, 97쪽.

5) 설문원, 「디지털 환경에서 도서관과 기록관의 협력방안」, 대학기록관협의회 정기세미나, 2009.5.7; 이소연, 앞의 글, 245쪽에서 재인용.

6) 서혜란, 「기록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도서관과 기록관의 협력」,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16권 제2호, 2005, 27쪽.

7) 최재희, 「국가차원의 문화유산기관 협력체 구성사례 및 시사점-영국 MLA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8권 제2호, 2008, 67-68쪽.

보존, 통합검색, 전문가 집단의 협력' 등 매우 광범위하다.⁸⁾

그러나 국내에서 문화유산기관 사이의 협력 사례는 매우 빈약하다.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과 부산시민도서관의 협력, 한국 관련 해외기록의 중복 수집을 방지하기 위해 국사편찬위원회·국가기록원·국립중앙도서관 등이 구성한 협의체 등 몇몇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⁹⁾ 문화유산기관 사이의 협력이 부진한 이유는 '인식 부족, 기관 이기주의, 정책결정구조의 분산, 전문성의 부족, 기관의 독립성 미비' 등이 지적되고 있다.¹⁰⁾

본고는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문화유산기관 사이의 협력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수용하고, 구체적으로 실행 전략을 비교 검토하여 그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문화유산기관의 정책은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문화유산기관 사이의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정책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¹¹⁾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은 첫째, 장기 발전 전망은 물론이고 협력 과제 실행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문화유산기관의 위상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다. 둘째, 문화유산기관의 발전 전략을 비교하여 그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글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국가 대표 문화유산기관들의 발전 전략에 주목했다.

2008년 8월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이하 '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했으며,¹²⁾ 2009년 6월에 국가기록원은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이하 '기록관리 선진화전략')을 채택했다. 2012년 5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박물관 발전 기본구

8) 외국의 다양한 협력 사례에 대해서는 서혜란, 앞의 글, 29-36쪽 참조.

9) 이소연, 앞의 글, 250쪽.

10) 서혜란, 앞의 글, 38쪽; 이소연, 앞의 글, 250쪽.

11) 서혜란, 앞의 글, 36쪽.

12) '도서관종합발전계획'은 '도서관정책 관련 모든 부처 및 도서관의 전 관종을 포괄하는 국가도서관 전체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한……국가 중장기계획'(차성중,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에 대한 평가모형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4권 제4호, 2010, 304쪽)이다.

상(이하 ‘박물관 발전구상’)을 발표했다. 이와 같은 발전 전략은 각 문화유산기관의 현재 구상과 발전 방향을 이해하고, 협력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정책 자료라 할 수 있다.

요컨대 본고는 앞서 언급한 문화유산기관의 발전 전략을 비교하여 정책의 차이와 공통점을 파악하고, 추진과제의 특성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협력을 가능케 하는 정책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도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발전 전략의 재설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새로운 협력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문화유산기관의 낮은 위상

문화유산기관 발전 전략의 수립 주체와 위상 문제를 검토하는 것은 문화유산기관 사이의 협력 확대, 공동의 과제 창출 등이 어떤 행정환경에서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문화유산기관의 위상은 발전 전략이 현실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향후 협력의 전망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가 대표 기억기관들은 모두 행정부처의 소속기관이다. 곧 국가기록원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¹³⁾하며, 국립중앙박물관장과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¹⁴⁾한다. 이들 기관은 설립 이후 현재까지 행정부처 소속기관의 지위를 벗어난 적이 없다. 따라서 인사·예산·정책 결정 과정 등 모든 업무가 소관 부처의 통제 하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유산기관의 발전 전략 수립과 추진과정에는 이와 같은 조건이 반영되어 있다.

1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

14)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 제43조.

먼저 국가기록원은 안전행정부의 소속기관임에도 불구하고 2000년부터 기록관리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사항을 관장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이 수립한 ‘기록관리 선진화 전략은 비록 기록관리법에서 규정한 대로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지만, 단 한 차례의 형식적 심의에 그치고 있다.¹⁵⁾ 이는 참여정부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의 기조인 ‘거버넌스 기록관리’가 형식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발전 전략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은 안전행정부 전체 예산 범주에서 설정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표 1〉 문화유산기관의 정책 수립 권한과 기능

| | 조직 | 기능 |
|-----|-----------|---|
| 기록관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 다음 사항을 심의함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간의 협력 및 협조사항 4.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5.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및 이관시기 연장 승인 6.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
| | 국가기록원 |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 2. 기록물관리 표준화 정책의 수립 및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운영 3.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4.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및 표준화 5. 기록물관리의 방법 및 보존기술의 연구·보급 6. 기록물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7.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평가 8.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협조 9.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류·협력 |

15)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제7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정기회의 결과 보고」, 2009.3.

| | | |
|-------------|----------------------------|--|
| 도 서 관 | 도서관정보 정책위원회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2. 도서관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3.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및 도서관자료의 접근·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박물관 정책기획단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서관정보정책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운영 지원 4. 도서관 관련 법령 제정·개정 및 제도의 개선 5. 공공도서관의 설립 및 육성지원 6. 도서관 운영 평가 및 통계 관리 7. 도서관 이용 및 민간참여에 관한 사항 8. 도서관자원 공동활용 및 도서관 간 협력 9. 독서문화의 진흥 10. 도서관 관련 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관한 사항 |
| | 국립중앙도서관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시책의 시행 2.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수집·제공·보존관리 3. 국가 서지 작성 및 표준화 4. 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 5.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협력 6. 외국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7. 도서관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 8.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
| 박 물 관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박물관 정책기획단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박물관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2. 학예사 양성 등 전문인력의 육성 3. 박물관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등 박물관 진흥 |
| | 국립중앙박물관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외 문화재의 보존·관리 2. 국내외 박물관자료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3. 국내 다른 박물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업무 협조 4. 국내 박물관 협력망의 구성 및 운영 |

*출처: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도서관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참조.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은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시책의 시행’이라는 집행 업무가 중심이다. 도서관 정책은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이하 ‘도서관위원회’)에서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2006년 출범한 ‘도서관위원회’는 현재 14명의 민간위원과 10명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⁶⁾ 비록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도서관위원회’의 위상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정책 수립에 대한 조정·집행 권한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이 갖고 있다. 곧 아래 신문보도에 서 지적한 것처럼 문화체육관광부의 통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설치 이후 6년 동안 대통령에게 한 번도 도서관정책을 보고한 바 없다. 이에 따라 도서관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도서관위원회는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도서관위원회는 총리실 소속으로 격하되거나 폐지될 운명에 놓여있다. 위원회는 별도의 사무국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 소속인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도정단)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범정부차원의 도서관정책을 추진하자는 도서관법의 취지는 무색해지고, 위원회는 대통령소속이지만 도서관정책은 문화부에 국한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¹⁷⁾

박물관 정책 수립 권한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 소관 사항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 9월 박물관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박물관 정책 전담부서인 박물관정책과를 신설했다.¹⁸⁾ 곧 국립

16) http://www.clip.go.kr/intro/intro_03.jsp;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7) 『내일신문』, 2013년 3월 5일자.

18) 『뉴스스』, 2012년 9월 7일자; 문화체육관광부는 1990년 박물관 정책 부서인 박물관과를 설치한 바 있으며, 1994년 박물관과 도서관 관련 정책을 포괄하는 도서관박물관과로 변경했다. 2004년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박물관정책과를 설치해 정책 기능을 이관했으나, 2008년 다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로 이관했다.

중앙박물관은 정책 수립 기능이 배제된 채 박물관의 수집·보존·전시·서비스 등이 주요 업무로 설정되어 있다.

요컨대 국가대표 문화유산기관은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이 독립적이지 못한 상태라 할 수 있다.

둘째, 문화유산기관 기관장의 직위와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다. 먼저 국가기록원장의 재임기간을 살펴보면, 1969년 정부기록보존소 설립 이후 2003년 3월까지 정부기록보존소장의 평균 재임기간은 약 1년 3개월, 2003년 4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국가기록원장의 평균 재임기간은 약 1년 2개월에 지나지 않았다.¹⁹⁾ 국립중앙도서관장의 경우는 1945년 설립 이후 평균 재임기간이 1년 8개월이었다.²⁰⁾ 이처럼 짧은 재임기간으로는 국가 대표 문화유산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다. 반면에 국립중앙박물관장은 1945년 설치 이후 2006년 8월까지 평균 재임기간이 7년을 상회했다.²¹⁾ 또한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정무직 차관급으로 임용되어 문화유산기관 가운데 가장 직위가 높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주로 임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기관장의 직위를 살펴보면, 국가기록원장과 국립중앙도서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고, 직무등급은 가등급이며 대부분 행정관료 출신이 임용된다. 그러나 국가를 대표하는 문화유산기관은 문화적 측면의 식견이 요구되는 자리이며, 복합적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기관의 성격상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한 직위이다. 따라서 행정관료 출신의 기관장들로 채워지는 한 문화유산기관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19) <http://www.archives.go.kr/next/organ/cheif.do>

20) 윤희윤, 「국가도서관장의 전문성 확보방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5권 제3호, 92쪽.

21)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60년: 1945~2005』, 2006, 부록 7 참조.

〈표 2〉 문화유산기관 기관장·부서장의 직위

| 구분 | | 직위 |
|-------------|-----------------|---|
| 국가기록원 | 원장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직무등급 가등급 |
| | 기록정책부장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직무등급 나등급 |
| | 기록관리부장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 직무등급 나등급 |
| | 기록정보서비스부장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 직무등급 나등급 |
| | 대통령기록관장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 직무등급 나등급 |
| 국립중앙 도서관 | 관장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 직무등급 가등급 |
| | 기획연수부장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직무등급 나등급 |
| | 자료관리부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직무등급 나등급 |
| | 디지털자료운영부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직무등급 나등급 |
| | 국립어린이청소년 도서관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직무등급 나등급 |
| 국립중앙 박물관 | 관장 | 정무직(차관급) |
| | 기획운영단장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직무등급 나등급 |
| | 학예연구실장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 공무원 직무등급 나등급 |
| | 교육문화교류단장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 직무등급 나등급 |

*출전: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참조.

한편 국장급 부서장의 경우 직위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이지만, 국가기록원의 경우 모두 행정직으로 임용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도 일부 직위를 제외하고는 행정 관료가 임용된다. 특히 정책 수립과 관련 있는 부서장에는 전문직을 배제하고 있다.

요컨대 문화유산기관의 낮은 위상과 기관장의 전문성은 매우 취약하다. 그러나 다음 장에서 살펴볼 문화유산기관 발전 전략에는 이와 같은 핵심 문제들에 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3. 문화유산기관의 발전 전략 비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1) 추진배경과 목표

문화유산기관의 발전 전략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록관리 선진화전략의 추진과정이다.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 수립 추진계획」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2007년 4월 '기록관리 2020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국가기록원 차세대 기록관리 추진방향'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이와 같은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2008년 6월 '국가기록관리 중장기 발전전략(안)'을 마련하고, 대통령실 연설기록비서관실과 협의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국가기록원, 대통령실 연설기록비서관실, 전문가, 각급 기록관리기관 등이 참여한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태스크포스는 정책·프로세스·정보화·서비스·대통령기록 분과 등으로 구분했다.²²⁾ 2009년 3월에는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어서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서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 종합실천계획(안)'을 심의·의결했

22)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 수립 추진계획」, 2008.9.

다.²³⁾ 6월에 ‘기록관리 선진화전략을 확정했다.

둘째, ‘도서관 발전계획’의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2년 문화관광부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3~2011)’을 수립한 바 있으며, 2006년 2월에는 ‘공공도서관 정책현황 및 발전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같은 해 10월 도서관법이 전면 개정되어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설치와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등이 규정되었다. 2007년 6월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집행을 위해 문화관광부에 기획단을 구성했다. 같은 해 8월부터 ‘도서관발전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2008년 8월 계획을 확정했다.²⁴⁾

셋째, ‘박물관 발전구상’의 추진 과정은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국이 중심이 되어 추진한 ‘중장기 박물관정책 추진방향’ 연구용역과 자문회의 등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박물관 발전 계획 수립 자문회의’는 2012년 1월부터 2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자문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박물관 관련 법령·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국립박물관과 대학박물관 운영 활성화 방안, 박물관 관리 전담 부서 설치 문제 등이었다.²⁵⁾ 한편 ‘중장기 박물관정책 추진방향’ 연구용역은 박물관 정책 환경의 변화, 중장기 박물관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 박물관 정책 중점 추진과제 개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박물관 발전구상’은 연구용역의 성과를 거의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²⁶⁾

요컨대 ‘박물관 발전구상’은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 정책 담당 부서(문화여가정책과)에서 추진했으며, 연구용역 결과물을 상당부분 수용한 특징이 있다. 비록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정책 수립 과정이 매우 짧은 점, 연구용역 결과와 유사한 점 등 발

23)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제7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정기회의 결과 보고」, 2009.3.

24)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 2008, 10-11쪽.

2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박물관 발전계획 수립 자문회의(1차~5차)」, 2012 참조.

2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중장기 박물관정책 추진방향』, 2012 참조.

전 전략으로서 상당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록관리 선진화전략’은 국가기록원이 중심이 되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기록관리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려 한 점,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점 등이 특징이다. 그러나 학계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반면에 ‘도서관 발전계획’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주도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한 점이 특징이다.

다음으로 발전 전략 수립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 배경은 “도서관을 둘러싼 지식정보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장기적·종합적인 발전진흥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²⁷⁾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식기반 사회에서 도서관의 기능은 ‘국가 지식 경쟁력과 창조적 지식을 갖춘 인재 양성’의 동력으로 규정하였다.²⁸⁾ 곧 “국가 지식 인프라의 원천으로서 도서관 육성, 사회통합 및 교육·문화 복지 증진을 위한 국민의 평생학습 공간으로서 도서관의 역할 확장, 정보 불평등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 기능 강화”²⁹⁾ 등을 목적으로 ‘도서관발전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록관리 선진화전략’의 수립 배경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국가기록관리 발전 방향 마련, 국가기록관리에 대한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의 부재”³⁰⁾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전자기록관리체계로의 전환, 기록유산의 국가브랜드화 요구 등의 환경변화와 정부의 선진화를 통한 세계 일류국가 구현 시책에 발맞춰 국가기록관리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목적”³¹⁾ 등을 들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충실히 따르려고 하는 기조를 강조하고 있는 점은 다른 기관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27)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앞의 책, 10쪽.

28) 『연합뉴스』, 2008년 8월 7일자.

29)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앞의 책, 7쪽.

30)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 수립 추진계획」, 2008.9.

31) 『성남뉴스』, 2009년 3월 13일자.

‘박물관 발전구상’은 박물관을 “한 국가의 문화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인식하는 가운데 “인류 지식생산의 보고이자 정보화 사회의 소통 문화에 걸맞은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의 주요 원천”³²⁾으로 간주하였다. ‘박물관 발전구상’ 수립 배경은 “문화예술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박물관의 역할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박물관 발전 정책”³³⁾의 요구로 집약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기록관·도서관·박물관 등 문화유산기관들은 지식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변화된 환경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그러나 문화유산기관의 발전 전략이 시기적으로 차이가 나는 점, 어떠한 연관관계도 맺지 않고 추진된 점, 협력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점 등은 한계라 할 수 있다. 이는 애초에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 범주에 문화유산기관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범정부적 차원에서 문화유산기관의 발전 문제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곧 문화정책의 틀 안에 문화유산기관이 자리 잡지 못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³⁴⁾ 이와 같은 한계는 문화유산기관의 현재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 위상이 낮은 점에 기인하는 것이다.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문화유산기관 발전 전략의 비전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 기록관리 실현”, “선진 일류 국가를 선도하는 도서관”, 인류 유산과 함께 미래 사회와 교육 발전을 선도“ 등으로 제시되었다. ‘박물관 발전구상’이 이명박 정부 말기에 수립된 점을 예외로 하면,

32) 『연합뉴스』, 2012년 5월 23일자.

33)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 발전 기본구상」, 2012, 1쪽.

34) ‘품격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을 목표로 한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은 2008년 수립된 ‘문화비전 2012’에 잘 나타나 있다. 주요 목표는 “문화가 펼쳐지는 나라, 콘텐츠로 부유한 나라, 이야기가 있는 관광의 나라, 스포츠로 신명나는 나라” 등이다. 추진방향은 “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 선택과 집중의 지원체계, 실용과 효율의 문화행정 전략, 상생하는 문화와 산업의 육성 전략, 문화를 통한 녹색 성장 전략” 등이었다(박광무,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 정책기조와 초기 정책성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 제42권 제2호, 2009, 183-184쪽).

나머지 발전 전략은 선진화를 강조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비전을 설정하고 있다.

〈표 3〉 문화유산기관 발전 전략의 비전과 목표

| |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 | 도서관발전종합계획 | 박물관 발전 기본구상 |
|------|---|--|---|
| 발표시기 | 2009년 6월 | 2008년 8월 | 2012년 5월 |
| 추진체계 | 국가기록원 국가기록관리위원회(심의)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조정) |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정책과 |
| 비전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 기록관리 실현 | 선진 일류 국가를 선도하는 도서관 | 인류 유산과 함께 미래 사회와 교육 발전을 선도 |
| 목표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실 있는 기록관리로 신뢰받는 정부구현 2. 국가기록관리 기반 강화로 선진 인프라 확충 3. 기록정보 자원화와 편리한 서비스로 지식정보사회 선도 4. 우리 기록문화의 글로벌 국가브랜드화로 국제적 위상제고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서관 서비스의 선진화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2. 도서관·정보 인프라의 고도화로 국가지식경쟁력 강화 3. 유비쿼터스 환경에 따른 미래형 도서관 구현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이 조화된 박물관 2. 공성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박물관 3. 문화와 교육이 함께하는 박물관 |

*출전: 국가기록원, 『국가기록관리 선진화전략 종합실천계획』, 2011;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도서관종합발전계획』, 2008;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 발전 기본구상』, 2012. 5.

문화유산기관 발전 전략의 목표는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곧 “국가기록관리 기반 강화로 선진 인프라 확충”, “도서관·정보 인프라의 고도화로 국가지식경쟁력 강화”,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이 조화된 박물관”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기록관리 선진화전략’과 ‘도서관

발전계획'의 추진 목표는 지식정보사회에 대한 대응으로 문화유산기관의 변화된 역할을 포함했다. 곧 “기록정보 자원화와 편리한 서비스로 지식정보사회 선도”, “도서관 서비스의 선진화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박물관 발전구상’에는 서비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2) 추진과제의 구성

‘기록관리 선진화전략’은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 4대 목표별 추진 과제,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추진체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서관 발전계획’은 개요, 지난 계획의 성과와 한계, 환경 변화와 대응, 계획의 비전 및 목표, 도서관 정책과제, 정책과제 추진일정 및 소관 부처 등으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박물관 발전구상’은 현황과 문제점 분석, 4대 추진방향 설정, 4대 추진방향 별 박물관 발전 추진과제, 소요예산 및 추진 일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4〉 추진과제의 구성

| | 제도 개선 | 인프라 구축 | 전문인력·교육 | 정보자원화 서비스 | 국내외 협력 | 계 |
|-----|---------------|---------------|---------------|---------------|---------------|---------------|
| 기록관 | - | 14 (42.5%) | 3 (9.1%) | 11 (33.3%) | 5 (15.1%) | 33 (100%) |
| 도서관 | 4 (5.7%) | 21 (30.0%) | 9 (12.9%) | 27 (38.6%) | 9 (12.9%) | 70 (100%) |
| 박물관 | 14 (51.9%) | 6 (22.2%) | 4 (14.8%) | 1 (3.7%) | 2 (7.4%) | 27 (100%) |
| 계 | 18 (13.8%) | 41 (31.5%) | 16 (12.3%) | 39 (30.0%) | 16 (12.3%) | 130 (100%) |

*출전: <표 3>과 같음.

이 글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문화유산기관의 발전 전략 추진과제를 제도 개선,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과 교육, 정보 자원화와 서비스, 국내외 협력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추진과제의 구성은 <표 4>와 같다.

‘기록관리 선진화전략’은 33개의 추진과제 중 인프라 구축 42.5%, 정보 자원화·서비스 33.3% 순이었으며, ‘도서관 발전계획’은 70개의 추진과제 중 정보자원화·서비스 38.6%, 인프라 구축 30.0% 순이었다. ‘박물관 발전구상’은 27개의 추진과제 중 제도개선 51.9%, 인프라 구축 22.2% 순이었다. 곧 기록관·도서관의 발전 전략은 인프라 구축과 정보자원화에 집중되어 있으나, 박물관의 경우는 제도 개선 과제가 압도적이다. 이러한 추진과제의 구성은 문화유산기관의 현재적 조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3) 추진과제 분석

(1) 제도 개선

제도 개선 추진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록관리 선진화전략’에는 제도 개선과 관련된 추진과제는 포함하지 않았다. 참여정부에서 추진된 기록관리 혁신의 결과 기록관리법 전부 개정, 대통령기록관리법의 제정 등으로 제도적 과제를 많이 개선한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도서관 발전계획’에서도 제도 개선 사항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다만, 대학도서관 정책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서 ‘(가칭)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 평가에서 대학도서관 평가 비중을 높이는 계획을 수립하였다.³⁵⁾

35)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도서관종합발전계획(2009-2013)』, 2008, 134-137쪽.

〈표 5〉 제도 개선 영역 추진과제

| | 세부과제 |
|-----|---|
| 기록관 | — |
| 도서관 | 1) 대학도서관 정책 지원체계 강화 2) 대학도서관 평가제도 및 통계시스템 개선 3) 공공도서관 평가제도 및 통계체계 구축 4) 전문도서관의 지식유통활성화를 위한 자원개발정책 수립 |
| 박물관 | 1) 박물관 설립·운영 최소 기준 마련 2) 국·공립 박물관 건립에 대한 사전평가제 및 사후감리제 도입 3) 국·공립 박물관 등록 의무화 등 박물관 등록제도 개선 4) 설립 예정 사립박물관 대상 사전컨설팅 제도도입 5) 사립박물관 비영리법인화 지원으로 안정적·항구적인 운영체제 구축 6) 박물관 평가인증제 도입 7) 국·공립 박물관 민간위탁 운영관리 기준 수립 보급 8) 박물관 관련 세제의 전반적 개선 추진 9) 국외 유물의 국내전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불보증제’ 도입 검토 10) 「박물관 기증유물 감정평가위원회」 설치·운영 11) 지방자치 단체 연계 사립 박물관 운영활성화 12)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평가에 박물관 운영실적 등 반영 추진 13)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문화향유 소외계층을 위한 박물관 이용 서비스 개선 지원으로 사립박물관 재정 부담 완화 14) 박물관 전문화를 위한 정책 추진체계 개선 |

*출전: <표 3>과 같음.

‘박물관 발전구상’은 상대적으로 제도 개선과 관련된 추진 과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정책과의 신설 등과 같은 정책 담당부서의 설치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었다. ‘박물관 발전구상’의

제도 개선 사항은 주로 평가 인증, 컨설팅, 설립 기준과 등록제도 개선, 재정 부담 개선 등이 주를 이룬다. 구체적으로는 ‘(가칭)종별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최소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사립박물관을 대상으로 한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 방안은 “환경, 관람객, 설립계획 분석 등 건립 타당성 점검, 설립계획 전반에 대한 대안 및 운영계획, 마케팅, 건축, 디자인 등 전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³⁶⁾

‘박물관 발전구상’은 기록관에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곧 과거 참여 정부의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과 ‘기록관리 선진화 전략’은 기록관 자체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조치를 취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기록관리 현황 평가만이 기록관을 제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박물관 발전구상’에서 제시된 내용을 수용하면, 다양한 기록관 모형 설정과 설립·운영 기준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록관 설립·운영과 관련된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정부 감사 등에 제대로 된 기록관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최근까지도 정부합동감사 등의 형태를 통해 부정기적으로 기관 평가에 기록관리 항목을 반영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더 나아가 이를 제도화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

(2) 인프라 구축

앞서 살펴본 것처럼 문화유산기관의 발전 전략은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비중을 할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프라 구축비중이 높은 것은 문화유산기관의 역할이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못 미치기 때문으로 보인다.

36)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정책과, 「박물관 발전 기본구상」에 따른 실행계획, 2012, 13-15쪽.

〈표 6〉 인프라 구축 영역 추진과제

| | 세부과제 |
|-----|--|
| 기록관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간행물·시청각기록물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2) 데이터세트·웹기록 등 전자기록물 체계적 관리 3) 표준시스템 보급 촉진으로 전자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확산 4) 기록관리 표준 고도화 및 확산 5) 기록물분류 및 평가체계 확립 6) RFID기반 업무처리를 통한 기록물관리의 효율성 강화 7) 정부산하 공공기관 기록관리체계 구축 8) 구 전자문서의 관리체계 구축 9) 전자기록 보존전략 및 재난 복구체계 마련 10) 전자기록체계 장기 보존·검증 관리체계 구축 11)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대비 기록물 관리 대책 마련·추진 12) 대통령기록물 유형별 보존·복원 방안 마련 13)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지원 14) 중간기록관리시설 건립 |
| 도서관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진 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권 공공도서관 확충 2) 생활밀착형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의 진흥 활성화 3) 지역대표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체계 수립 4) 주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개선 5) 공공도서관의 장서 확충 6) 학교도서관 인프라 확충 7) 학교도서관 지원예산의 확충 8) 학교도서관진흥 추진체계 개선 9) 학교도서관 진흥재단 및 지원시스템 도입 10) 장병의 자기계발을 위한 병영도서관 개선 11) 수용자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교도소도서관 개선 12) 국립 과학기술·농학·의학도서관 등 설립 추진 13) 각급 행정기관 자료실의 주제분야별 전문도서관화 추진 14) 세계 8위 수준의 장서확충계획 추진 15) 국가문헌의 과학적 보존관리와 전승 16) 국가 도서관지식정보서비스 체계 구축 |

| | |
|-----|--|
| | 17) 도서관 조사연구기능 확대 18) 국가 서지 데이터 작성 및 제공 강화 19) 국회 법률도서관 기능 확대 20) 법률정보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물적·인적 인프라 확충 21) 민간기업의 전문도서관 구축 유도 |
| 박물관 | 1) 박물관을 지역 관광의 거점으로 육성 2) 박물관을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거점으로 육성 3)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문화향유 소외계층을 위한 박물관 이용 서비스 개선 지원으로 사립박물관 재정 부담 완화 4) 국립박물관의 선도적 역할 강화 5) 국립민속박물관 용산 확대·이전 건립 추진 6) 자연사박물관 건립 추진 지원 |

*출전: <표 3>과 같음.

인프라 구축은 대체로 다양한 문화유산기관의 설립을 과제로 삼고 있다. ‘기록관리 선진화 전략’은 중간기록관리 시설 건립,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 지원, ‘도서관 발전계획’은 장서 확충, 과학기술·농학 등 분야별 도서관과 전문도서관 설립, ‘박물관 발전구상’은 자연사박물관 건립 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록관은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에 도서관 설립은 학교 도서관, 병영도서관, 작은 도서관 등 그 층위가 아래로 내려가 있다. 이는 문화유산기관의 인프라 환경이 균등하지 않으며, 도서관과 박물관에 비해 기록관 환경이 열악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인프라 구축 과제에는 웹 기록·데이터 셋 등 전자기록관리 체계 구축, 국가 서지 데이터 구축 등과 같은 문화유산자원의 관리와 관련된 인프라도 포함되어 있다.

(3) 전문인력·교육

〈표 7〉 전문인력·교육 영역 추진 과제

| | 세부과제 |
|-----|--|
| 기록관 | 1) 기록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 2) 각급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지원 3) 기록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
| 도서관 | 1) 도서관서비스 전문화를 위한 사서자격제도 개선 2) 사서양성 교육과정 강화 및 평가제도 도입 3) 주제전문사서제도 및 양성 프로그램 활성화 4) 도서관 전문인력의 재교육 프로그램 강화 5) 공공도서관 전문인력 확보 6) 공공도서관 전문인력 충원의 내실화 7)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배치에 관한 기준 마련 8) 학교도서관 운영인력 전문화 9) 사서교사 배치기준 마련 등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확충 |
| 박물관 | 1) 학예사 제도의 수직적 등급 체계 단순화 및 수평적 전문화 도모 2) 박물관 업무영역 세분화 및 전문인력 적정 배치기준 마련 3) 전공과정, 교수 및 학습시스템 등 연계, 특성화 대학박물관 지원 4) 박물관 행정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체계화 |

*출전: <표 3>과 같음.

발전 전략에는 ‘기록관리 전문인력 양성·배치’, ‘도서관 인력의 전문화 및 관련 제도의 선진화’, ‘박물관 인력의 전문화’ 등 전문가의 양성과 배치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문화유산기관 발전 전략의 공통된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기록관리 선진화전략’은 기록관리법에서 규정한 내용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 곧 대학원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교과과정 표준화, 인증제도 등 전반적 제도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반면에 ‘박물관 발전구상’은 ‘박물관학 교육과정 표준안의 연구·보급³⁷⁾’을 설정하고 있으며, ‘도서

관 발전계획'은 대학의 '문헌정보학 교육제도와 교육내용의 개선' 등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³⁸⁾

(4) 정보 자원화·서비스

선행 연구들은 문화유산기관 사이의 정보서비스 협력방안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각 기관들은 여전히 정보자원화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곧 국가기록물 검색기반 강화를 통한 기록정보자원화, 국가기록물 고유 식별체계 구축, 기록정보 온라인 시스템 고도화, 지식창조형 Library 2.0 환경 구축, 국가 디지털 레퍼런스 서비스 체계 구축, 국가메타데이터 레지스터리 체계 구축, 국가자료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박물관 소장품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기록관의 서비스 전략은 콘텐츠 개발, 온라인·모바일 서비스 등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변화된 환경에 적극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엿볼 수 있다. 도서관의 서비스 전략은 대상을 구체화하고, 정보 소외 계층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려는 특징이 있다.

〈표 8〉 정보자원화·서비스 영역 추진 과제

| | 세부과제 |
|-----|--|
| 기록관 | 1) 국가기록물 검색기반 강화를 통한 기록정보자원화 추진 2) 대국민 기록정보서비스 확대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3) 디지털기록의 통합 관리체계 구현 4) 온라인 및 모바일 열람서비스 확대 5)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기록물 공개제도 개선 6) 국가기록물 고유 식별체계 구축 7) 기록정보 온라인 시스템 고도화 추진 8) 전시회 등 찾아가는 기록문화 확산 |

37)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정책과, 앞의 글, 4쪽.

38)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앞의 책, 149-151쪽.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9)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기록관리 컨설팅 지원 10) 해외기록물 수집 다원화 및 홍보강화 11) 기록문화 인식 확산을 위한 민간기록물 발굴 및 홍보 강화 |
| 도서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서관을 통한 원스톱 주민생활 서비스 제공 2) 공공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활성화 3) 공공도서관 어린이서비스 확대 4) 공공도서관 자원봉사체계 확립 5) 학교도서관 이용서비스 확대 6) 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다양화 7)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 활성화 8) 고령자를 위한 도서관서비스 제공 9) 다문화 가정을 포용하는 도서관 서비스 제공 10) 정보접근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접근기회 제공 11) 실용위주의 맞춤형 정보활용교육의 강화 12) 차별화된 전문도서관서비스 고품질화 구현 13) 전문도서관의 서비스 가치평가와 운영평가 기준 개발 14) 지식창조형 Library 2.0 환경 구축 15) 협력형 국가 디지털 레퍼런스 서비스 체계 구축 16) 도서관 지식정보콘텐츠의 효율적인 정보유통망 구축 17) 국가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 체계 구축 18) 지식공유문화 확산을 위한 오픈엑세스 거버넌스 체계 구축 19) 인포메이션 커먼스 기반의 하이브리드형 도서관 모델 개발 20) 국가도서관정보화에 대한 조정 역할 및 기능 강화 21) 도서관정보화 관련 성과관리 체계 개발 22) 도서관-교육활동 연계서비스 확대 23) 입법정보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24) 종합법률정보서비스의 수준 제고 및 개방 확대 25) 학술정보자원의 확충 26) 대학도서관 간 자원공유 확대 27) '국가자료종합DB' 구축 |
| 박물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박물관 소장품의 DB 구축 등 보존관리 및 공공적 활용 강화 |

*출전: <표 3>과 같음.

(5) 국내외 협력

문화유산기관은 국내외 교류, 협력을 발전 전략에 포함하고 있다. 특히 '도서관 발전계획'은 '문화유산관련 기관간의 지식·정보 공동 활용'을 명시하여 문화유산기관의 협력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표 9〉 국내외 협력 영역 추진 과제

| | 세부과제 |
|-----|--|
| 기록관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리 문화의 국가브랜드 제고 2) 기록관리 국제협력 강화 3) 남북 기록관리기관간 기록물 교류 추진 4) 산관학 협력을 통한 기록관리 연구개발 5) 헌법기관 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 도서관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도서관 국제교류 및 협력체제 강화 2) 관종·지역·분야별 도서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3) 문화유산관련 기관간의 지식·정보 공동활용 4) 상호대차 강화를 통한 국가 학술 연구정보협력 활성화 5) 세계주요도서관 및 도서관정책기구와의 교류협력 강화 6) 남북한 도서관간 상호교류 및 협력 확대 7) 학교도서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 8) 지방의회 지원 및 입법정보 교류협력 확대 9) 국내외 법률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 박물관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외 기관 연계 학술연구 및 국제 교류 진흥 2) 해외 박물관 한국실 지원 효율화 및 체계화 |

*출전: <표 3>과 같음.

곧 '국가 차원에서 지식정보관리기관 사이에 연계 필요성이 증대'했으며, 이에 따라 '문화유산기관의 소장 자료 통합 검색·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 '문화유산 공동 활용 협력체결,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구체적으로 국가기록포털,

문화유산종합정보서비스, 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 등의 연계를 제시했다.³⁹⁾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다른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오랜 기간 독자적 발전과정을 추구했던 문화유산기관들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 공통의 과제를 설정하고, 공동체의 기대에 부응하는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디지털 시대의 요구이기 때문이다.

한편 문화유산기관 사이의 남북교류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기록관은 내부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않은 조건으로 인해 국내 교류협력은 헌법기관과의 협력 등에 한정하고 있다. 국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문화유산기관의 공통 관심사이다.

4. 협력을 위한 문화유산기관의 발전 전략 재설계

디지털시대로의 전환에 따른 이용자의 요구 변화는 분명 문화유산기관의 협력을 촉진하는 요소이다. 그러나 문화유산기관의 발전 전략을 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물론 ‘도서관 발전계획’은 문화유산기관의 협력을 추진과제로 설정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유산기관협의회의 구성, 문화자원의 공동 활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문화유산기관의 협력을 촉진하고, 변화된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문화유산기관의 발전 전략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1) 문화유산기관의 정책 기초를 변화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이명박 정부에서 수립된 문화유산기관 발전 전략은 개별 기관의 독자적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변화된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또한 오랜 기간 지속된 문화유산기관의 낮은 위

39)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앞의 책, 180쪽.

상을 감안하면, 독자적인 발전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따라서 공동의 협력을 통해 문화유산기관을 사회 속에 뿌리 내리고, 이 과정에서 개별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전략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소속기관으로서의 역사성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독자적 발전 전망을 폐기하고, 공동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곧 기록관·도서관·박물관 등을 아우르는 큰 틀에서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공동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정책 전환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2) 정책 기조의 전환과 함께 당면한 문화유산기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활동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협력은 중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국가 수준의 문화유산기관 발전은 물론 마을 공동체 수준의 기초 단위에서 협력할 문제 등을 포괄해야 한다. 또한 전체 문화유산기관의 협력뿐만 아니라 기록관과 도서관, 도서관과 박물관, 기록관과 박물관 사이의 협력이 적극적으로 추동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록관·도서관·박물관 등 문화유산기관의 네트워크도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3) 문화유산기관의 낮은 그리고 불균등한 위상을 바로 세우는 문화정치가 전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기록원장,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직위를 국립중앙박물관과 같이 정무직 차관급으로의 전환을 요구해야 한다. 기관장의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인사·예산, 정책 수립·집행권을 문화유산기관이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에 대해 문화유산기관은 ‘도서관 발전계획’에서 제시된 ‘문화유산기관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관련 학계 등은 학회 구성 등을 통해 문제제기와 정책 과제 개발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는 ‘(가칭)문화유산부’와 같은 정부조직으로의 발전 전망을 모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4) 문화유산기관이 당면한 공통 과제를 협력을 바탕으로 제도화하는 노력을 수행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문화유산기관 발전 전략

의 상당 부분은 다양한 기관 설립 등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차원에서 전개되어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곧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균형적 발전은 물론 다양한 문화유산기관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문화유산 발전의 기반 조성, 사업과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가칭)문화유산 진흥 기본법’ 등의 제정을 공동 추진할 필요가 있다.⁴⁰⁾ 이를 통해 문화유산 진흥 과제를 국가 정책 아젠다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문화유산 예산 30% 증액’과 같은 슬로건을 내걸고 예산 증액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5) 문화유산기관 사이의 협력은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자치의 공간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문화유산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문화유산기관이 만들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마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서울시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 만들기 주요 사업 가운데에는 마을 아카이브 구축도 포함되었다. 곧 마을 아카이브를 기록관·도서관·박물관 등의 기능이 포함된 공간으로 설정하고, 문화유산기관이 공동 대응하여 구체적인 협력 사례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⁴¹⁾ 작은 도서관·학교 도서관 또한 이러한 작업이 가능한 공간이다. 이와 같은 낮은 단계의 협력을 통해 구체적 사례가 축적되면, 자치구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수준으로 협력 모형을 확대하고, 나아가 국가 수준의 다양한 협력 모형을 창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40) 최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민간 기록 관리를 국가기록관리 체계에 포함하자는 논의는 주목할 만한 제안이다(안병우 외, 『한국 공공기록관리의 쟁점과 전망—2013년 기록관리체제를 위하여』, 『기록학연구』 제34호, 2012, 20쪽). 그러나 독자적 발전 전망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41) 문화유산기관의 복합 기능에 대한 연구는 최영실,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복합 기능을 구현한 라키비움의 공간 기능에 관한 연구」, 『문화산업연구』 12(2), 2012 참조.

(6) 또한 선행연구에서도 지적한대로 문화유산기관의 협력은 소장 문화자원의 공동 이용과 서비스를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먼저 문화유산기관 공동으로 국가 전체의 광범위한 문화유산 자원에 대한 종합적 조사·분석,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곧 어떠한 자원을 선별하여 서비스 할 것인지가 분석되어야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문화유산 자원 조사 방법론이 축적되어 협력의 구체적 상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7)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문화유산기관의 협력적 발전을 위해서는 기록학·문헌정보학·역사학·박물관학 등의 분야에서 문제의식을 지닌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학회를 구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학회 구성 전 단계에는 관련 연구자들이 문화유산 진흥 방안 등을 공동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회를 구성하고, 문화유산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하여야 한다. 이는 문화유산기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게 하고,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사회화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또한 문화유산기관과 공동으로 전문성 향상 방안 연구,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등의 활동을 통해 문화유산기관 사이의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가야 한다.

5. 맺음말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문화유산기관의 발전 전략은 각 기관의 독자적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 ‘도서관 발전계획’이 비록 문화유산기관의 협력을 추진과제 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지만, 기록관·박물관은 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디지털 시대로의 변화라는 이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환경 변화에 외국의 문화유산기관들이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우리 문화유산기관의 저발전 상태를 보

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곧 한국의 문화유산기관은 아직 인프라의 부족,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를 갖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문화유산 진흥을 위해 문화유산기관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요구된다. 곧 문화유산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발전 전략을 구상하는 것은 각 기관의 당면 과제를 실현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이 될 수 있다. 공동 발전 전략에는 문화유산기관의 협력과 조정을 위한 ‘문화유산기관 협의회’ 구성, 문화유산 예산 증액, 문화유산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와 같은 방향 전환을 바탕으로 문화유산기관의 협력 수준은 낮은 단계, 곧 마을공동체와 같은 최소 지역단위에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대학교 또한 기록관·도서관·박물관의 협력 모형을 구축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다. 작은 단위에서 문화유산기관이 공동의 사업을 통해 협력의 구체적 상을 마련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축적된 협력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초 자치단체 나아가 광역 자치단체, 국가 차원으로 점차 확대해 가는 단계적 발전 전략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문화는 정치의 주요 요소 가운데 하나이며, 문화의 초석은 문화유산이다. 문화유산의 진흥은 한국을 문화국가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따라서 문화유산기관의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한 공동의 노력은 그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Development Strategies of Cultural Institutions

Kwak, Kun-Hong

The medium and long term pla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for the cooperation between cultural institutions such as archives, libraries and museums. This paper tries to analyze comparatively the development strategies' backgrounds and tasks of the national representative cultural institutions, with their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Limitations of the development strategies caused by their low stature are also presented in the paper. Accordingly this paper put emphasis on the changeover from separate and individual development strategy to joint and collaborative one for the cooperation between cultural institutions.

Key words: cultural institutions, memory organizations, National Archives